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영덕소방서 자체감사 –

2022. 10.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건	2	3	1	1,398	0	0	0	0
1	영 덕 소 방 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2	영 덕 소 방 서	휴지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소홀	1							
3	영 덕 소 방 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1		1	1,398				
4	영 덕 소 방 서	민원수수료 세입처리 및 일일결산 소홀		1						
5	영 덕 소 방 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 1

2. 휴지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소홀 (시정) ····· 4

3.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시정) ····· 6

4. 민원수수료 세입처리 및 일일결산 소홀 (주의) ····· 8

5. 의용소방대 교육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주의) ···· 10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영덕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영덕소방서 AAA과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1]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2]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사예정금액[3]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함

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면 전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여러개의 전문업종이 단순히 복합된 공사를 말함

3)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금액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H전담의용소방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KKK(주)와 계약 체결하였다.

〔표1〕 공사계약 면허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 약 일	공사예정금액	계약금액	계 약 상 대 자		정당면허
				업체명	면허종류	
H전담의용소방대 청사환경개선공사	2019.4.15.	19,750	19,750	KKK(주)	토목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그 결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정당한 건설업자는 수주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2. 수의견적제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할 수 있고, 재공고입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4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수의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해야 하고, 입찰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견적 제출을 재공고하거나 입찰의 방법으로 공고 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영덕소방서 □□□□□ 계약을 수의견적 제출로 공고하고서도 무응찰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다수 있는데도 견적서 제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표2〕 수의견적제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내용

(단위 : 천원)

계약명	견적서 제출공고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부적정 수의계약사유
2021년 영덕소방서 □□□□□ 계약	2021.4.5.	46,551	43,411	JJJ	1회 유찰

그 결과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었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업체[4]들은 견적서 제출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나라장터 조회결과 경상북도내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12개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지신고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관리 소홀
소 관 청	영덕소방서
관 계 부 서	CCC과
내 용	

영덕소방서 CCC과에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구 소방방재청)」 제3조에 따르면 휴지에 다른 안전조치는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와 휴지사실의 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사용정지·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휴지기간 중 지켜져야 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화재예방 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나 사용정지·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HHH 등 2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현장확인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고,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출입금지 조치 미이행, 휴지시설 안내판 미설치, 건설 및 농자재 적치, 주유기 잠금장치 미설치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휴지시설 안전관리 소홀 내용

업체명	휴지신고일	안전조치 미이행내용
HHH	2021.5.11.	· 주유기 잠금장치 미설치 · 건설 및 농자재 적치 · 휴지시설 안내판 미설치 · 출입금지조치 미이행
YYY	2021.7.1.	· 출입금지조치 미이행 · 휴지시설 안내판 미설치 · 기름저장탱크 잠금장치 미설치

그 결과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덕소방서장**은

휴지 기간이 1년을 경과한 HHH 등 2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조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덕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영덕소방서 AAA과에서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 및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등)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방호활동비 170천원, 구조구급활동비 10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활동비) 지급에 대해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2. 7월까지 소방장 M 등 13명이 휴직, 교육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특정업무경비 총 1,603,896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부적정 지급 내역

연번	대상자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내역
	계급	성 명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과지급	미지급	과지급	미지급	
		합 계	1,388,640	137,636	9,670	67,950	
1	내용	생략	-	115,350	-	61,290	2018.2.20.~2018.5.19.(휴직)
2			-	5,660	-	-	2018.9.13.~2018.11.25.(휴직)
3			175,120	-	9,670	6,660	2018.5.28.~2018.6.29.(교육)
4			44,040	-	-	-	2018.4.30.~2018.7.6.(교육)
5			5,660	-	-	-	2018.4.30.~2018.7.6.(교육)
6			43,870	5,660	-	-	2018.7.9.~2018.9.14.(교육)
7			-	5,483	-	-	2019.7.29.~2019.8.30.(교육)
8			39,660	5,483	-	-	2019.6.24.~2019.8.30.(교육)
9			39,660	-	-	-	2019.6.24.~2019.8.30.(교육)
10			180,960	-	-	-	2021.7.12.~2021.8.13.(교육)
11			339,990	-	-	-	2021.5.10.~2021.7.9.(교육)
12			219,350	-	-	-	2022.5.23.~2022.7.22.(교육)
13			300,330	-	-	-	2022.4.25.~2022.6.17.(교육)

※ 영덕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덕소방서장은

과지급된 방호활동비 등 1,398,310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시고, 미지급된 205,586원은 대상자에게 지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수수료 세입처리 및 일일결산 소홀
소 관 청	영덕소방서
관 계 부 서	EEE과
내 용	

영덕소방서 EEE과에서는 「지방회계법」 및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위험물 인·허가 등 민원 처리 후 발생되는 증지 판매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금고 소재지가 있는 곳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 증빙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험물 인·허가 등 민원 처리 후 발생되는 증지 판매 수입금을 금고 소재가 있는 곳에서 수납한 경우 다음날까지 세입처리 하여야 하고, 결손처리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부터 2022. 7. 15. 감사일 현재까지 방염성능검사 및 위험물 인·허가 등 총 113건의 민원 수수료를 세입처리하면서 29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을 경과하여 세입처리 하였고,

2021. 4. 20. 결손 처리한 20,000원은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2018. 8월부터 2020년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은 채로 관리하였다.

[표] 민원 수수료 세입처리 지연 내역

연번	연도	민원내용	매수	금액	처리일자	세입일자	지연일	비고
1	2018	내용 생략	1	20,000	1.09.	1.11.	1일	대장 미작성으로 공문 확인
2			1	15,000	1.23.	1.26.	2일	
3			1	20,000	2.01.	2.06.	2일	
4			1	20,000	7.03.	7.09.	3일	
5			1	20,000	7.17.	7.19.	1일	
6			1	20,000	7.26.	7.30.	1일	
7	2019		1	20,000	4.30.	5.02.	1일	
8			1	12,500	4.30.	5.02.	1일	
9			1	12,500	4.30.	5.02.	1일	
10			1	20,000	7.15.	7.22.	4일	
11			1	20,000	7.15.	7.22.	4일	
12	2020		1	20,000	1.30.	2.04.	1일	
13			1	20,000	2.18.	2.20.	1일	
14			1	20,000	12.08	12.10.	1일	
15			1	12,500	12.22.	12.28.	3일	
16			1	6,250	12.22.	12.28.	3일	
17	2021		1	12,500	2.05.	2.10.	2일	공문과 관리대장 대조
18			1	6,250	2.08.	2.10.	1일	
19			1	20,000	2.08.	2.18.	7일	
20			2	37,500	3.11.	3.15.	1일	
21			1	20,000	4.30.	5.04.	1일	
22			1	20,000	8.11.	8.27.	10일	
23			1	20,000	10.15.	10.20.	2일	
24	2022		1	20,000	2.08.	2.14.	2일	
25			2	18,750	2.22.	2.25.	1일	
26			1	20,000	3.03.	3.07.	1일	
27			1	20,000	4.15.	4.19.	1일	
28			1	20,000	5.03.	5.06.	1일	
29			3	38,750	6.26.	6.29.	2일	

※ 영덕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덕소방서장은

앞으로 세입금에 대한 일일결산을 철저히 하고, 수납금은 정해진 기일내에 금고에 납부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관리 부주의 및 자녀장학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덕소방서
관 계 부 서	HHH과, JJJ과
내 용	

영덕소방서에서는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등을 관리하고,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 해임 사유 등)에 따르면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훈련 시간이 연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지급정지) 및 연도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 자격요건으로 타 대원의 모범이 되고 특별한 유공이 있는 대원의 자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여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의용소방대원은 해임토록 하여야 하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 HHH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전담의용소방대원 N이 2018년 기준 교육훈련 연 12시간 이상의 기준에 미달하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해임하지 아니하였고,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해임 대상인 N의 자녀를 2019년 1학기 장학금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표] 장학금 지급자 중 해임대상자 교육·훈련 이수 현황

의용소방대원			교육실적		장학금 지급	
소속	성명	직위	2018년	비고	지급시기	지급액(천원)
○○전담의용소방대	N	○○○○	5시간	해임대상	2019. 1학기	1,000

그 결과 해임대상인 N의 자녀를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하고 장학금 1,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덕소방서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임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 바랍니다.**(주의)**